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4

2018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9월 7일 김용석 의원외 12명

2. **회부일자** : 2018년 10월 1일

3. **상정일자** : 제284회 정례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12월 17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이병도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화장실 등”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조례안의 개요

○ 본 조례안은 공공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 등을 통해 시민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음.

○ 제정안은 총 14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조례의 목적(안 제1조)으로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규정을 명시하였음.

- 그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을 위해 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및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안 제5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안 제6조), 안심보안관(안 제7조), 신고체계의 마련(안 제8조), 실태조사 실시(안 제9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및 화장실 관리자등과의 협조(안 제11조)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그 외 교육과 홍보(안 제13, 14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조문 배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7조(안심보안)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실태조사)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조) 제12조(교육 등) 제13조(홍보) 제14조(시행규칙) 부 칙

2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디지털기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소위 몰래카메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 건수가 매해 늘어나 2015년에는 7,623건에 달하다가 2017년 현재는 6,465건으로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나,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 피해자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구속		피해지현황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불상
2013	4,823	4,380	90.8%	2,832	2,770	62	74	-	4,823	95	4,119	609
2014	6,623	6,361	96.0%	2,905	2,856	49	61	-	6,623	172	5,468	983
2015	7,623	7,432	97.5%	3,961	3,866	95	101	-	7,623	120	6,325	1,178
2016	5,185	4,904	94.6%	4,499	4,382	117	134	-	5,185	160	4,204	821
2017	6,465	6^20	96.2%	5,437	5,271	166	119	-	6,465	199	5,515	751

출처 : 경찰청(2018.11),「2017 경찰통계연보」

○ 따라서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주요사항 검토

□ 총칙 규정(안 제1조～제3조)

○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안 제1조)과 용어정의(안 제2조),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하고 있으며,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통합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기본적,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정의 규정(안 제2조)에서는 “불법촬영”을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항[1] 인용한 것임.

- 특히 지난 9월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통상 몰카(몰래카메라)라고 약칭되어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이로 인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성을 드러내고 거부감이 적은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바 있음.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근거 마련(안 제4조~안 제9조)

○ 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지난 8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수립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15290, 2018.8.31.)”과 관련하여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근거를 개별 조항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만 안심보안관(안 제7조)의 경우, 이미 행정사무감사나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번 지적된 것과 같이 집행실적은 있으나 실제로 적발하거나 검거한 사례는 한 건도 없어, 사업의 실효성에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한편 공공화장실 실태조사(안 제9조)는 공중화장실 관리 주무부서인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의 연계성이나 자치구와의 협조 등을 고려해볼 때, 동 조례안의 소관 부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간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칸막이 행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조항	관련 사업 및 내용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가용자원 총동원, 1일 1회이상 점검 실시** - 공공시설 화장실(20,554개소):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 담당미화원 등 8,157명이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결과 기록(1일 1회 이상 챔임점검) - 민간개방 화장실(3,803개소): 사회적일자리 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지역 인적자원활용 주 2회이상 정기점검 시행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 **안심보안관 활용, 특별 관리대상화장실 수시 집중 점검** -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후 특별 관리대상 선정: 약 1천개소(구별 40개소 내외) - 신고 및 점검요청 화장실은 즉시 안심보안관 출동 점검 실시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및 지원책** - 자체점검 민간화장실에 대한 「서울시 점검 확인제도」 시행 : '점검 확인증' 표식 제공 및 부착, 점검 장비 100대 임대
제7조(안심보안관)	○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 고용형태 : 사회적일자리사업, 월 950천원(1일 6시간, 주3일) - 주요업무 : 공용화장실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캠페인 - 운영실적 : 불법촬영점검 122,593개소, 예방캠페인 4,491회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 **안심이 앱 활용한 불법촬영장비 신속 신고시스템 구축** - 안심이 앱 기능에 불법촬영장비 설치 의심장소 신고 시스템 추가 구축

	: 관제센터→관할경찰서→여성안심보안관으로 이어지는 신고 대응 체계 마련 - 신고된 민간화장실 점검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공동대응
제9조(실태조사)	**○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 공중화장실 1차 실태조사 : ' 17.7월~9월 - 공중화장실 2차 실태조사 : ' 18.8월~9월 - 조사내용 : 위치, 남녀구분, 개방시간, 장애인화장실 유무, 비상벨 설치 여부 등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시행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교육 등(안 제10조~제11조)

○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동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여러 부서뿐만 아니라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정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이 요구되며, 특히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 관계 유지를 위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이기는 하나 정책 실효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또한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은 일방적인 규제나 제한을 넘어서 대시민 인식개선과 안심할 수 있는 화장실 이용 문화 조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4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시민들이 공공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화장실 관리 주무부서와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사업의 추진 부서가 상이한 바, 조례 주관부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서간, 관련 주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불법촬영은 공공화장실 외에도 모텔 등의 숙박업소나,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화장실로 장소를 한정하기 보다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

발의년월일 : 2018년 9월 7일
발 의 자 : 김용석, 김광수, 권영희, 장상기
송명화, 김제리, 황인구, 송도호
이상훈, 봉양순, 김호평, 이동현
이현찬 의원(13명)

1. 제안이유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화장실 등”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화장실 등”이란 공공화장실과 민간화장실을 말한다.
2. “공공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내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
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와 자치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자치구, 자치구가 설립한 직영기업·공사 또는 공단,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고시된 기관 또는 그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

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공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정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추진 내역

조례안 규정	비 고
제4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가용자원 총동원, 1일 1회이상 점검 실시> ▸ 공공시설 화장실(20,554개소) : 시설별 관리부서 지정, 담당미화원 등 8,157명이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결과 기록(1일 1회이상 챔임점검) ▸ 민간개방 화장실(3,803개소) : 사회적일자리 또는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 지역 인적자원활용 주2회이상 정기점검 시행 ▸ '18 예산 : 400백만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활용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공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안심보안관 활용, 특별 관리대상화장실 수시 집중 점검> ▸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전수조사 후 특별 관리대상 선정 : 약 1천개소(구별 40개소 내외) ▸ 신고 및 점검요청 화장실은 즉시 안심보안관 출동 점검 실시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민간화장실 자체점검 및 지원책> ▸ 자체점검 민간화장실에 대한 「서울시 점검 확인제도」 시행 : '점검 확인증' 표식 제공 및 부착, 점검 장비 100대 임대 ▸ '18 예산 : 400백만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활용

조례안 규정	비 고
제7조(안심보안관) ①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 고용형태 : 사회적일자리사업, 월 950천원(1일 6시간, 주3일) ▸ 주요업무 : 공용화장실 불법촬영장비 점검 및 캠페인 ▸ 운영실적 : 불법촬영점검 122,593개소, 예방캠페인 4,491회 ▸ ’ 18 예산 : 778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 일부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안심이 앱 활용한 불법촬영장비 신속 신고시스템 구축> ▸ 안심이 앱 기능에 불법촬영장비 설치 의심장소 신고 시스템 추가 구축 : 관제센터→관할경찰서→여성안심보안관으로 이어지는 신고대응 체계 마련 ▸ 신고된 민간화장실 점검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공동대응 ▸ ’ 18 예산 : 1,397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 일부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 공중화장실 1차 실태조사 : ’ 17.7월~9월 ▸ 공중화장실 2차 실태조사 : ’ 18.8월~9월 ▸ 조사내용 : 위치, 남녀구분, 개방시간, 장애인화장실 유무, 비상벨 설치 여부 등 ▸ ’ 18 예산 : 164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사업비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여성안심보안관 등 교육 추진> ▸ 불법촬영장비 운용 교육 및 실습 등 관련 교육 실시 : ’ 18. 9월 ▸ ’ 18 예산 : 100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비 일부
제13조(홍보) 시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불법촬영 인식개선 및 불안감 해소 활동 등 홍보> ▸ 불법촬영 관련 경고 메시지 전파 및 서울시 근절노력 홍보 : 130개 지하철역사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수준, 신고방법 등 게시 서울시 불법촬영 근절노력 홍보 예정(’ 18. 9월중 게첨) ▸ 불법촬영 STOP! 인식개선 캠페인 :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전개(’ 18.10월~) 동영상 콘테스트 우수작 활용(’ 18.10월 온라인 공모) 1000명의 인터넷 시민감시단, 불법촬영물 온라인 유통 감시활동 강화

자료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사업설명서 등